

제324회 임시회
2013. 10. 17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
심사보고서

2013. 10. 17(목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최미애 의원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3년 9월 25일
-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2013년 10월 8일

-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최미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조성과 함께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, 교육훈련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전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 -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책, 예산 마련 및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활성화에 노력해야 함.

- 3년 주기로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(안 제6조)
 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개선, 상담, 교육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-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(안 제7조)
 -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.
-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(안 제8조)
-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)

- 동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3조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을 탈피하여 자립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·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증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자립생활”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.
3. “활동지원급여”란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.
4. “동료상담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56조에 따라 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을 말한다.
5. “동료상담가”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수행하는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지를 통한 역할모델을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.
6. 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)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,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“장애실태조사”로 같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제5조(자립생활지원 신청) ① 충청북도에 거주하거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친족, 후견인 등 관계인은 도지사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장애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립생활 지원)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
2.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
3. 심리적,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
4.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
5.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,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
6.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
7.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
8. 보조공학 기구 제공 등 재활보조
9.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
10.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

제7조(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) 도지사는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.

제8조(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동료 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, 센터의 장은 장애인으로 하며,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③ 도지사는 센터가 제6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센터의 사업) 센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정보제공과 의뢰
2. 권익옹호 및 증진
3. 동료상담
4.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
5. 활동보조서비스
6. 주택 개·보수 활동
7.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활동
8.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동
9. 사례관리
10.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, 수리, 임대 등 지원활동
11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,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1조(위원회 의결사항)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, 평가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에 관한 사항
4.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2조(제재 조치)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
2.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장애인"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2. "중증장애인"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
제4조(중증장애인의 기준)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(장애 1,2등급)
2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 · 시각장애인 · 지적장애인 · 자폐성장애인 · 정신장애인 · 심장장애인 · 호흡기장애인 ·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

□ 장애인복지법

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(이하 "중증장애인"이라 한다)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1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,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4조(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5조(활동지원급여의 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6조(장애동료간 상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39조의2(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)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(이하 "자립생활센터"라 한다)의 의사결정,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,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2.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,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.

3.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.

가.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

나.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개선 사업

다.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·증진

라.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

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,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.

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, 사업 수행, 재정 확보,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40조의2(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) ①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

2.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

3.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

4.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로 하여금 장애동료 간 상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활동지원급여"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제16조(활동지원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3.30>

1. 활동보조: 장애인활동지원인력(이하 "활동지원인력"이라 한다)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
 2. 방문목욕: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
 3. 방문간호: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(이하 "방문간호지시서"라 한다)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
 4.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: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
- ②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·절차·방법·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